강제추행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모욕

[대구지방법원 2009. 6. 12. 2008고합74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신교임

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진홍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벌금 1,5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